

제13장  
경제협력

제 1 절  
일반 규정

제 13.1 조  
기본 원칙

1. 양 당사국 간 무역, 투자 및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 협정의 완전한 활용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양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관심 및 이익 분야에서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 활동이 양 당사국 간 기존의 협정이나 약정을 보완하고 이를 기초로 하고자 함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협력 활동을 확인하고 이행하는 데 민간 분야, 학계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수요 중심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고 상호 협력으로 추진되는 경제협력을 수행하고자 함을 확인한다.

제 13.2 조  
목적

경제협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이 협정에 따른 기회와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 당사국의 역량 강화
- 나. 양자적, 지역적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협력의 강화 및 개발
- 다.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증진
- 라. 무역 및 투자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그리고 경쟁력 및 혁신 증진
- 마. 양 당사국 간 협력 관계를 고려하면서, 협력 활동의 수준 향상, 그리고
- 바. 국제 시장에서 양 당사국과 그들의 상품 및 서비스의 비중 확대 장려

## 제 2 절 경제협력 분야

### 제 13.3 조 범위

경제협력 활동은 이 절에 포함된 분야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양 당사국은 제 13.10 조에 기술된 경제협력 소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따른 추가적인 협력 분야를 모색할 수 있다.

### 제 13.4 조 공급망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상이한 경제적 및 지리적 특성과 역량 제약을 고려하여, 공급망의 복원력, 효율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투명성, 다변화 및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2.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특히 잠재적 부족이 자국의 국가 안보, 공중 보건 및 안전 또는 중대하거나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의 방지에 미치는 영향과 단일 공급자나 단일 국가, 지역 또는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한, 각 당사국의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 식별
  - 나. 핵심 분야와 주요 상품 생산에 대한 투자 증진, 촉진 및 장려
  - 다. 교통 및 물류서비스와 인프라 개발, 유지 및 개선
  - 라.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조치 또는 행동과 관련된 우수 관행 개발
  - 마. 공급망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발굴 및 촉진
  - 바. 공급망 교란에 대처하는 우수 관행 또는 경험 공유, 그리고
  - 사.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거나 당사국이 공급망 교란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의 협력

### 제 13.5 조 운송 및 물류

1. 양 당사국은 운송 네트워크, 물류 서비스 및 인프라를 개선하여 한국, 조지아 및 제 3국 간 여객 및 상품의 이동을 개선하고 운송 흐름의 유동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모든 단계에서의 인프라 개발, 개선 및 현대화
- 나. 운송 정책 및 규제 체계 개발
- 다. 표준, 품질 보증, 계량 및 적합성 평가 서비스에서의 제도적, 기술적 및 행정적 역량 강화
- 라.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같은 운송 기술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및 정보 교환 촉진
- 마. 기상 예보, 위험물 관리 및 비상 대응을 포함한 운송 부문의 안전성 및 신뢰성 개선, 그리고
- 바.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 항공서비스 협정」과 같은 양자 운송 협력 협정 및 약정에 따라 달성한 진전을 고려하고 통합하며, 정보 교환 및 공동 활동 촉진

### 제 13.6 조

#### 관광

- 1. 양 당사국은 경제 성장 및 역량 강화 그리고 고용 및 국제 교류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의 개발 강화를 목적으로 관광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한다.
- 2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정보, 우수 관행, 경험 및 노하우(know-how)의 교환
  - 나. 효율적인 관광 정책의 개발 및 이행

- 다. 각 당사국으로의 입국 방문자 증가를 위하여 관광 개발 및 증진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 모색
- 라. 관광객 이동, 제품 및 시장, 인프라, 인적 자원 및 제도적 구조의 증진 및 개발
- 마. 관광 및 교통 당국과 기관이 양 당사국 간 항공 연결성을 개선하도록 장려
- 바. 양 당사국의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 및 기관이 관광 훈련 및 역량 강화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 그리고
- 사. 양 당사국 영역에서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업

### 제 13.7 조 에너지 및 광물 자원

- 1.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 2.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에너지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우수 관행 공유
  - 나. 국내 법률 규정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경우,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분포, 매장량과 개발 계획에 관한 지질학적 데이터 또는 정보와 같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과 관련된 정보 교환
  - 다.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추출, 가공, 운송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공동 활동 증진

- 라. 양 당사국 간 공공, 학계 및 민간 부분의 관련 전문가, 기술자 및 지도자 등의 방문 및 교류 촉진
- 마.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증진
- 바.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에너지원, 공급자 및 수송 경로를 다변화 하기 위하여 공동의 관심인 에너지 인프라 증진

### 제 13.8 조

#### 투자

-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외국인 투자 분야 일반 정책에 따라, 자국 영역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장려하고 증진할 수 있으며, 투자 활동의 증진에 협력한다.
- 2.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양 당사국 간 경제협력의 증진 및 강화
  - 나. 양 당사국이 관심을 갖는 특정 투자 사안에 대한 협의 개최
  - 다. 투자 흐름의 향상을 위한 노력, 그리고
  - 라. 투자 흐름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 제 13.9 조

#### 문화

1.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문화 협력이 창의 산업의 발전, 문화적·경제적 교류의 강화, 양 당사국간 이해 증진과 그들의 문화 산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청각(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엔터테인먼트(연극, 라이브 밴드, 뮤지컬 등), 문화 유산,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그리고 비디오 게임과 같은 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특히 가.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 교환, 나. 기술적 지원, 다. 지식 공유, 라. 문화 분야에서의 시청각 공동 제작과 같은 공동 제작 확대, 그리고 마. 문화 서비스 활동의 목적상, 출입국 절차 및 일시 입국의 원활화를 통하여 협력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양국 문화 유산에 대한 불법 거래의 확인, 원상태로의 복원 및 방지를 포함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은 국가 유산의 보존을 목표로 역사적 문서의 디지털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청각 분야에서의 공동 제작 협정을 고려하고 협상하기로 합의한다.
5. 제 4 항에 언급된 공동 제작 협정은, 일단 체결되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6. 제 4 항에 언급된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공동제작 사업은 각 당사국 영역에서 국내 제작물로 간주되며 따라서 각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정부지원을 포함한 모든 혜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 제 3 절 이행

제13.10조

## 경제협력 소위원회

1. 제 18.3 조(소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된 경제협력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양 당사국은 상호 동의로 논의될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대표를 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이 장의 이행을 검토하고 양 당사국의 이 장에 따른 협력 활동 참여에 관한 양국의 보고 접수
  - 나. 이 장에 따른 협력 활동에 관한 권고
  - 다. 이 장에 따른 협력 요청 접수 및 양 당사국과의 협력,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요청에 관련된 임시 작업반 설치 및 유지,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기능
3. 소위원회가 설치한 작업반은 적절한 경우, 이행을 위한 권고를 개발하고 소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과 협력한다.
4. 소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회합하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각 회의의 날짜, 장소 및 의제는 연락처 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부터 30일 내에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락 창구를 지정한다. 이 장의 목적상,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나. 조지아의 경우, 경제 및 지속가능개발부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 제13.11조

#### 자원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활용하도록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한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및 파트너십 개발 에 관심이 있는 다음과의 협력 및 다음으로부터의 기여를,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고려할 수 있다.

가. 비당사국, 개발 파트너 또는

나. 소지역, 지역 또는 국제 기구나 기관

### 제13.12조

#### 분쟁해결 규정의 비적용

제16장(분쟁 해결)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 또는 분쟁에도 적용되지 않는다.